

해체공사감리자 모집 공고

「건축물관리법」 제31조에 따라 해체허가 등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해체공사감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
2025년 3월 11일

경기도지사

I. 공고개요

- 공고기간 : 2025.3.11.(화) ~ 2025.3.30.(일)
- 공고장소 : 경기도 및 시·군 홈페이지, 관련 협회 등

II. 모집기준

- 모집목적
 - 「건축물관리법」 제31조에 따라 해체허가 등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을 위하여 해체공사감리자 등록명부 작성
- 등록자격 및 등록제외 사유
 - (등록자격) 공고일 전날(2025.3.10.)까지 경기도에 아래 법령에 따라 개설신고·등록을 하고 있는 자(업체)로서 해당 법령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

· 「건축사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·도지사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자. 또는 같은 조 제9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 신고를 한 자.

·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26조제1항 및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의 업무범위를 건설사업관리업으로 시·도지사에게 등록한 자.

※ 신규 등록을 원하는 감리자만 신청 (기존 명부에 포함된 감리자는 신규 신청 불필요)

- (등록제외 사유) 아래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1. 해체공사감리자 모집공고일(25.3.11.) 현재 업무정지나 휴업 중인 경우
 2. 해체공사감리자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(24.3.11.~25.3.10.) 업무 정지 및 영업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
 3.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로 중복 등록* 신청하는 경우
- * 사업자등록번호당 1개의 사무소만 등록 가능

III. 등록신청

- 신청기간 : 2025.3.31.(월) ~ 2025.4.4.(금) 18:00 (5일간)
- 신청방법 : [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]에 온라인 신청
 - ※ <https://blcm.go.kr/cmm/main/mainPage.do> (회원가입) 해체공사감리자
- 첨부서류
 - 사업자등록증
 - 개설신고확인증 (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확인증,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)
 - 교육 수료증 (교육 미이수자는 교육이수번호 기재란에 “이수 예정”으로 작성)
 - 재직증명서 및 자격 확인서류 (소속건축사 및 기술인의 경우, '25.3.1. 이후 발행분)

IV. 기타 안내사항

- 온라인으로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, 제출서류 미비,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록 명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- 해체공사감리등록 신청자는 등록 제외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무소 등록 소재지 1개 권역에만 신청해야 합니다. ※ 경기도 26개 권역

구분	권역	구분	권역	구분	권역
1	수원시	10	평택시	19	양주시
2	고양시	11	의정부시	20	안성시
3	용인시	12	파주시	21	포천시
4	성남시	13	시흥시	22	여주시
5	부천시	14	김포시	23	양평군
6	안산시	15	광명시	24	동두천시
7	화성·오산시	16	광주시	25	가평군
8	남양주·구리시	17	이천시	26	연천군
9	안양·군포·의왕·과천시	18	하남시		

- 첨부서류가 미비할 경우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으로 보완내용이 통보되며, 보완기간 내 보완서류 미제출시에는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 시스템 상 반려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.
-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된 감리자만이 「건축물관리법」에 따라 해당 권역에서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.
- 「건축물관리법」 제31조의2에 따라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하려는 자는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합니다.
 - ※ 다만, 교육 개설 시기 등을 고려하여 교육 미이수자는 명부에 등재될 수 있으나 교육 이수 완료 증빙 서류를 제출한 이후에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 가능
- 해체공사감리자는 「건축물관리법」 제32조 및 「건축물관리법 시행령」 제23조의2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.
-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 「건축물관리법」 제3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처분될 수 있습니다.
- 기타 해체공사감리자의 등록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합니다.
- 모집공고 관련 ‘자주 묻는 질문’은 경기건축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 - 경기건축포털 : ggarchimap.gg.go.kr [건축안전 > 자료실(건축안전)]
- 모집 결과(해체공사감리자 명부)는 ‘경기건축포털 자료실(건축안전)’에 공개('25.4.18.예정)되며, 모집공고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건축정책과 건축안전팀(☎031-8008-3236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 붙임 > 해체공사감리자 등록 신청 방법 (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) 1부. 끝.

붙임

해체공사감리자 등록 신청 방법 (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)

1. 시스템 로그인 후 메인화면 상단의 “해체공사감리자 > 해체공사감리자 관리 > 감리자 신청현황” 메뉴를 선택하여 해체공사감리자 신청 목록을 조회합니다.



2. “해체공사감리자 신청 목록” 오른쪽 하단의 “신청서 작성” 을 선택합니다.



3. “해체공사감리자 신규신청” 화면에서 신청내용을 작성 후 하단의 **신청** 을 선택합니다.

접수정보

작성 시 유의사항

- 제출처 선택 시 신청내용, 등록요건 및 제출서류, 해체공사감리자(원)교육 수료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.
- 제출처 선택 시 제출처를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.

제출처 * 제출처 선택

신청구분 신규신청 → 경기도 선택

신청내용

작성 시 유의사항

- SMS 송신 동의 시 휴대폰번호를 인증하고 입력할 수 있습니다.
- 휴대폰인증을 완료하시면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시 알림 문자가 발송됩니다.

사업자구분 * 법인 개인

성명 * ① 사무소명 *

생년월일 * 예시) 19800101 전화번호 * - -

② 사업자번호 * - - 사업자등록증 * 파일선택 선택한 파일 없음

③ 사무소주소 * 지상 -

SMS 송신 동의 *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④ 휴대폰번호 * - - 인증

팩스번호 - -

등록요건 및 제출서류

⑤ 신고번호 * - -

⑥ 개설신고확인증 * 파일선택 선택한 파일 없음

⑦ 자격번호 * 제 호 행정처분조회서 * 파일선택 선택한 파일 없음

첨부 불필요

해체공사감리자(원) 교육 수료증

교육이수번호 해체공사감리자(원) 교육 수료증 * 파일선택 선택한 파일 없음

⑧ 제 호

해체공사감리자 권역 지정

⑨ 권역명 지역(시군구)

- ① **사무소명** : 관할 기관장이 발급한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,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상 사무소(상호,법인)명 기재
 - ② **사업자등록번호** :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번호 기재
 - ③ **사무소주소** :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기재
 - ④ **휴대폰번호** : 근무시간(평일 09~18시)중 상시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
 - ⑤ **신고번호** :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번호,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번호
 <예시> 수원시-건축사사무소-00호, 경기-1-2-345호
 - ⑥ **개설신고확인증** :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, 건설엔지니어링업(건설기술용역업) 등록증
 - ⑦ **자격번호** : 건축사 자격번호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번호
 - ⑧ **교육수료증** : 해체공사감리자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교육 수료증
 ※ 교육 미이수한 경우 교육이수번호 기재란에 “이수 예정”으로 작성하고, 감리업무 실시전까지 이수하여야 함
 - ⑨ **권역지정** : 사무소 등록 소재지 1개 권역만 선택 가능
- * 행정처분조회서 제출 X : 행정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확인 후 처리 예정

4. “해체공사감리자 신청목록”에서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- ▷ 신청 : 해체공사감리자 등록 신청 완료
- ▷ 접수 : 담당자 접수 완료 (“25.4.4. 이후 순차적으로 접수)
- ▷ 보완 : 신청서 보완 요청
- ▷ 완료(반려) : 등록 신청 반려 (등록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)
- ▷ 완료(해결) : 등록 완료 (“24.4.18. 전후 확인 가능, 해체공사감리 지정 가능 상태)

> > > 해체공사감리자 > 해체공사감리자 관리 > 감리자 신청 현황

해체공사감리자 신청 목록

이용안내

- 해체공사감리자의 신규신청, 내용변경신청, 휴폐업신청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신규신청은 오른쪽 하단의 '신청서 작성' 버튼을 누르면 작성이 가능합니다.
- 내용변경신청, 휴폐업신청은 명부가 생성된 후 감리자 명부조회메뉴에서 명부를 조회하여, 상·하단의 '내용변경신청, 휴폐업신청' 버튼을 누르면 작성이 가능합니다.

시도 시도 선택 신청구분 전체

접수일자 ~ 상태 전체

0 건이 조회되었습니다

순번	사무소명	성명	시도	신청구분	상태	신청일자	접수일자	처리일자
1	㈜○○건축사사무소	김○○	경기도	신규신청	신청	2024-04-00	-	-

※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명부 등재 제외되거나 등재 이후라도 등재취소 및 영업정지등 행정처분될 수 있습니다.